

Ⅱ 대학원 등록 및 학적에 관한 내규 Ⅱ

제정 : 2004. 12. 27

개정 : 2011. 3. 1

개정 : 2016. 11. 29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4장(등록, 휴학, 제적, 자퇴 및 복학), 수업연한, 재학 연한 및 수료에 관한 세부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09.3.1. 개정)

제2조(등록)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

제3조(정규등록) ① 정규등록은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경우 4학기까지, 석·박사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학생의 경우 7학기까지의 등록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계과정을 통한 석사학위과정 조기 수료자의 경우는 등록기간을 1개 학기 단축할 수 있다.

③ 수업연한을 경과하고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계속하여 정규등록을 하여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수강신청 학점이 1~3학점까지는 정규수업료의 1/2을, 4학점 이상일 경우에는 정규수업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05.10.17. 개정)

제4조(연구등록) ① 연구등록은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을 수료한 자가 해당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속하여 하는 등록을 말하며, 연구등록 학기는 대학원 학칙 제27조(재학연한)에 정한 기간 이내로 한다. 단, 연구등록이 10회를 경과한 이후 연구등록학기의 연구등록금은 납부하지 아니한다.(’07.4.23., ’09.3.1., ’11.3.1. 개정)

② 연구등록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해당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나,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는 없다.

③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의 수료자가 연속하여 연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 처리되며, 재입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등록한 학기에 대한 연구등록금과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금) 정규등록 및 연구등록 납입금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휴학 및 복학) 재학생의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제17조(휴학)와 제18조(복학)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연구휴학 및 복학)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을 수료한 자 중 연구등록 해당자의 휴학은 1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시기 및 절차는 이 내규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제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으로 처리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일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 학기초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로 인해 면학분위기를 저해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으로

징계 처분된 자

제9조(재입학) 재입학과 관련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제13조(재입학)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수료의 요건)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에서 4학기 이상, 통합과정에서 7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마치고 대학원 학칙 제23조(취득학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09.3.1. 개정)

제11조(수료자의 등록)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의 수료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이 내규 제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동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내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의 연구등록에 관한 사항은 2004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10.17.)

제1조(적용) 이 변경 내규는 제3조(정규등록) ③항은 2006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5년 10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4.23.)

제1조(적용) 이 변경 내규는 제4조(연구등록) ①항은 2004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4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3.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3.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